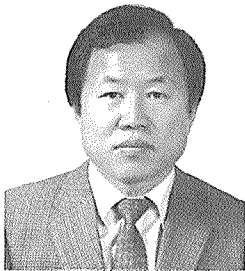


# 輸入政策에 대한 평가 및 향후 方向



商工部 輸入課  
書記官 待遇  
李 庚 燦

## 1. 序 論

한 나라의 經濟發展을 위해서 市場開放化 政策이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自由貿易主義와 保護貿易主義의 두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며, 이중 어떠한 發展戰略을 채택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經濟的, 社會的 狀況과 發展段階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부족하고 工產品의 輸出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自由貿易主義에 바탕을 둔 開放化 戰略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도 우리의 政策方向과 基調는 開放化의 큰 흐름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로서 韓國市場은 政治的으로 민감한 일부 農產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部門의 輸入에서 완전 開放된 상태에 있다.

이와같이 市場이 開放된 경제구조하에서는 經濟規模의 增大에 따라 輸入이 增加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의 증가가 수입증가에 크게 못미쳐 國際收支의 문제가 야기되어 전체적인 經濟운용을 제약한다든지 輸入의 急增으로 國內 關聯產業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때에 輸入의 부정적 측면만 ㅅ점을 맞

추어 輸入의 긍정적 역할을 도외시하는 保護主義의 주장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의 실체는 60~70年代의 무역 환경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國際貿易에서의 우리의 位相과 役割이 높아졌고 우리를 둘러싼 國際貿易 環境과 交易 파트너들이 우리를 대하는 視覺이 크게 변모한 현 상황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視覺에서 輸入自由化를 포함한 輸入政策 전반에 대한 評價와 앞으로의 輸入政策이 어떤 方向으로 나가야 할지를 檢討하고자 한다.

## 2. 輸入自由化의 進展

우리나라에 있어 輸入自由化 政策은 産業 및 貿易 環境의 變化에 따라 함께 變化해 왔다. 短期的으로는 經濟狀況에 따라 開放과 抑制施策을 선택적으로 推進해 왔으나 長期的, 巨視的으로는 經濟의 成長에 발맞추어 開放趨勢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정부주도하에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輸出主導의 發展戰略을 채택한 時期였던 만큼 輸入은 輸出用原資材와 工業化에 필요한 物資를 調達하는데 필요한 機能으로 인식되었으며 輸入에 대한 전반적인 政策基調와 認識은 다분히 抑制的, 否定的이었고 대부분의 産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國內産業을 보호하는 方向으로 政策이 운용되어져 그 결과 量的 成長은 이루었으나 産業間, 地域間, 企業間의 不均衡이 露呈됨은 물론 資源配分の 歪曲으로 社會와 産業의 非效率化가 문제점으로 드러난 時期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國內産業은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과 開放을 통한 國際競爭力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1977년에 이르러 輸出規模가 100億달러를 돌파하자 이를 계기로 하여 1970年代 후반부터 輸入自由化를 본격 推進하게 되었다.

다만 輸入開放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輸入이 급증한 일부 消費財 및 不要不急 品目を 輸入監視 品目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輸入을 유보토록 하는 輸入 監視制度和 輸入의 地域別 均衡을 위

한 輸入先多邊化制度를 導入, 運營함으로써 輸入自由化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1970年代 후반기부터 본격화되던 輸入自由化의 진전이 2차 석유과동으로 다소 추춤했으나 危機가 克服되고 지속적인 成長을 이루어 나가게 되자 1981년부터 輸入制限의 實効성이 없거나 이미 國際競爭力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品目들을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인 開放을 推進하는 한편 國際的인 競爭을 유도하여 經濟의 效率性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獨寡占 분야에 대해서도 自由化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6年 들어 최초로 國際收支 赤字를 달성하여 우리 經濟에 자신감이 불고 美國을 비롯한 先進交易國들의 市場開放 要求가 強化되자 輸入開放은 더욱 加速化되기에 이르렀다.

금년 현재의 輸入自由化率을 살펴볼 때 전체적인 輸入自由化率은 97.7%, 工產品의 경우는 99.9%에 달하여 政治 社會的 이유로 유보된 일부 農水產物 品目を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輸入自由化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輸入自由化率의 확대와 함께 輸入과 관련된 기타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市場開放을 推進하여, 貿易業 許可要件중 輸出實績 制限基準을 삭제하여 貿易業 許可要件을 완화하고 藥事法등 個別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각종 輸入制限의 要素들을 제거하는 한편 關稅率의 단계적 인하, 輸入保證金 制度의 폐지('90. 3), 輸入監視 制度의 폐지('88. 12), 輸入先多邊化 品目の 단계적 축소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여 선진적 輸入管理 制度를 확립해 왔다.

구 분	'80	'85	'90	'91	'92	'93	'94
수입자유화율	68.6	87.7	96.3	97.3	97.7	98.1	98.5
평균관세율	24.9	21.3	11.4	11.4	10.1	8.9	7.9

이상과 같은 대폭적이고 실질적인 自由化가 國內産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被害救濟制度를 新設하고 이를 專擔할 貿易委員會를 設置, 運營함으로써 사후적 輸入管理 體制로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3. 輸入政策에 대한 評價

#### 가. 輸入自由化에 대한 評價

우리나라가 그간 推進해왔던 각종 輸入政策은 당시의 對內外的인 여건하에서 대체로 불가피했고 적절하였으며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는 있었으나 政策推進 過程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輸入自由化에 대비하여 보완제도로써 마련한 輸入監視制度, 輸入先多邊化 制度 등이 사전적, 수량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對外通商 마찰을 유발한 면이 있고 農林水產業 및 零細產業의 業種 轉換과 競爭力制度 등 產業構造 改編을 위한 보완정책이 미흡하였으며, 貿易委員會를 통한 產業被害 救濟制度가 다소 늦게 導入된 면이 있다.

또한 '86-'88년간 貿易收支 黑字가 급격히 확대된 시기에 있어서 산업영향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黑字管理보다는 通貨管理과 對外通商 마찰(특히, '89. 5 美國 PFC 지정 움직임 등)을 의식하여 단기적인 黑字管理(총수입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輸入增加勢의 適正化와 輸入의 內實化를 위한 배려에 보다 충실치 못했던 점이 있으며, EC와의 확대 균형적 貿易을 위한 노력이 크게 부족하여 對美 편향적 開放政策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 점도 있었다.

또한 對外通商 압력을 의식하여 輸入開放과 輸入制度의 改善을 서두른 결과 先進國에서 취하고 있는 직접, 간접적인 수입절차적 관리를 충분히 연구, 활용치 못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도 있겠다.

#### 나. 輸入節次 管理政策에 대한 評價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貿易政策 基調는 장기적으로는 開放化의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다. '80年代 중반이후 經濟發展과 함께 國內產業이 競爭力을 갖추고 國際收支가 黑字를 실현하자 그간 도의시 되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 對內的으로는 資源配分の 效率化와 企業의 自生力 강화 要求가 일고 對外的으로는 GATT 18條 2項의 졸업 要求, OECD 加入 要求 등 國際的 책임과 역할 분담 요구등이 잇따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대폭적인 輸入自由化를 실시하고 GATT 18條 2項을 졸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輸入政策은 國際收支 防禦와 國內產業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억제적 政策으로 성격지어 지고 '輸入은 國內產業과 競爭의인 것', '輸入은 輸出에 附隨되는 것' 등의 認識이 支配的이었기 때문에 輸入品目的 特성에 따른 輸入節次를 관리하는 政策에 대한 改善의 速度가 市場開放의 速度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현재의 輸入管理制度 중에도 國民의 保健, 衛生, 安全, 環境, 善良한 風俗을 保存하기 위한 節次 規定 뿐만 아니라 사전적, 수량적, 수입규제적인 規定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경쟁 제한적이고 통상 마찰적인 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輸出入公告에 의한 輸入制限, 輸入先多邊化 制度 등이 사전적, 수량적 規制의 性格을 지니고 있고 特別法에 의한 輸入制限도 실질적으로는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輸出入 主體를 規制하는 貿易業 許可制度 역시 改善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4. 향후 輸入政策 方向

우리의 輸出入 規模는 經濟의 成長과 함께 持續的으로 擴大되어 왔고 貿易規模 擴大에 따라 우리에게 要求되는 國際貿易上的 債務과 役割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國際收支 운용상의 均衡을 추구해야 할 政策目標가 常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 輸入은 어떻게 管理되어야 할 것인가? 과거 赤字時代의 規制的이고 後進的인 管理의 틀을 벗어나 상황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制度의 先進化를 推進하고 輸入機能의 效率化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輸入節次 管理制度를 先進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GATT 11條國으로 이행함에 따라 輸入制限을 규정하고 있는 輸出入公告, 對日輸入을 規制하고 있는 輸入先多邊化制度, 個別法上的 輸入規制의 要所, 輸入承認制度에 대해서도 先進國制度和 일치하게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후적 관리수단으로서의 產業被害救濟制度,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關稅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GATT 20條, 21條 등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國民保健, 衛生, 環境 등을 目的으로한 輸入制限과 관련하여 각종 規格, 基準等 技術的 管理規定(TBT)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GNP의 30%에 달하는 輸入의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높이고 輸入原價 負擔을 輕減시키는등 輸入의 效率化를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輸入의 獨寡占에 따른 價格의 歪曲과 資源配分の 非效率性, 輸入附帶費用 過多負擔등의 문제들은 계속 해결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輸入商들이 精確한 情報를 이용하여 經濟的인 輸入先을 모색하고 기타 輸入附帶費用의 節減努力을 기울여 1%의 成果를 올릴 수 있다면 年間 約7億弗 이상을 節減할 수 있고 아울러 國際收支 改善效果를 거둘수 있다는 단순계산도 가능하다.

세째로, 지역간 輸入構造上의 격차를 改善하여 交

易相對國과의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고 擴大 均衡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輸入先을 각국으로 多邊化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政府主導下에 여러활동을 展開해 왔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GATT의 무차별 원칙에 어긋나고 政府主導의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통상마찰의 소지를 더욱 크게 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役割도 앞으로는 民間業體 들이 나서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째로, 앞서 언급한 제도적, 구조적 접근외에 輸入에 대한 종전의 인식, 즉 輸入의 逆機能에만 초점을 맞춘 保護論的 視覺, 예컨대 輸入은 國內産業과 競爭的이고 國際收支 赤字要因으로 작용하며 輸出에 從된 概念으로 理解하는 등의 認識을 변화시켜 輸入의 純機能도 浮刻함으로써 輸入을 보는 視覺이 보다 均衡된 國民的 共感帶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면된다 자신 갖고 다시한번 뛰어나자